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일부규정개정안

1. 의안주문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일부규정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한다.

2. 제안이유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나. 현행 학칙 제69조 제2항에서는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학생·인재개발처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이 장애학생 지원 관련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학생 지원 정책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이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기능 또한 장애학생 지원 전문성과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규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기능 및 법령 취지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라. 따라서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법적 역할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장애학생 지원체계의 실효성 및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칙 제 69조 2항

-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학생·인재개발처장”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변경

4. 시행일

- 대학 평의원회 심의일로부터 시행

5.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1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69조 (장애학생지원) ① (생략)</p> <p>② 장애학생 교육 복지의 수월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와 지원을 <u>위하여 학생·인재개발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u>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제69조 (장애학생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